

안용복

03

제1차 도일(1693년 3월~12월)

안용복의 1차 도일은 조선의 쇄환정책을 모르는 일본인이 울릉도를 무인도라고 착각하고, 그곳에서 독점적인 어업권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증거로서 안용복일행을 인질로 잡아간 사건이었다. 이렇게 납치된 이후의 일본에서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자. 4월에 오키국의 후쿠우라에 도착하여, 번소에서 안용복과 그를 납치한 오오야 가문의 사공들은 취조를 받았고, 번소는 안용복 등을 직접 심문했다. 오키국에서 요나고로 이동되어서는 에도의 지시를 기다린다. 오키국에서 요나고로 이송된 안용복 일행의 조사 내용은 에도에 있는 돗토리 번주에게 보고가 되고, 이것은 다시 막부에게 보고된다. 막부에서 조선인을 나가사키로 이송하여 귀국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진 후, 돗토리번은 돗토리 城下로 안용복일행을 오게 한다. 그리고 그곳의 공회소에서 머물다 돗토리번 측은 이들을 호위하여 나가사키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사료를 갖고 더 연구해 볼 사안이지만, 사료 『控帳』을 가지고 오키국과 요나고, 돗토리 城下로 가는 과정을 검토해 본 결과, 안용복은 납치되었다고 확인되었고, 에도에 갔다고 하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제 2차 도일

제2차 도일은 안용복의 자발적인 결행이었다. 1696년 1월 막부는 울릉도 · 독도의 조선 영속과 일본 어민의 도해 · 어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대마도가 서계 접수를 미루는 바람에 시행이 계속 늦춰지고 있었다.

그러자 안용복은 자신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직접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관리로 자칭해 도일하는 대담한 계획을 실행했다. 그의 준비는 치밀했다. 그는 울릉도 · 독도가 강원도에 소속된 것으로 그려진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와 자신이 입을 푸른 철릭(靑帖裡- 무반 당상관의 공복), 검은 갓, 가죽신 등 증빙 자료와 물품을 마련했다.

1696년 3월 안용복은 조선 어민을 대거 이끌고 울릉도로 갔다. 그 뒤 일본에서 안용복은 32척의 배를 동원했다고 진술했는데, 1척에 5명씩만 잡아도 160명이나 되는 규모다.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일본 어민들은 예전처럼 조업하고 있었다. 양국의 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안용복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안용복은 그들의 월경죄를 꾸짖고 다시 호키 주로 갔다. 그는 대담하게 행동했다. 그는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島監稅官)’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준비한 관복을 입어 정식 관원처럼 차린 뒤 호키 주의 수석 가로(家老) 아라오 오오카즈(荒尾大和)와 담판했다. 안용복은 대마도주의 죄상을 고발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호키 주에서는 그것을 막부에 전달했다.

이때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던 안용복의 계획은 그러나 난관에 부딪혔다. 그동안 조선과의 대일 통교를 담당해온 대마도가 개입했기 때문이었다. 막부의 연락으로 안용복의 입국과 직소(直訴-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상급 관청에 직접 호소함) 사실을 알게 된 대마도는, 안용복이 조선의 관원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의 관례와는 달리 자신을 거치지 않고 막부와 직접 접촉하도록 허락한(좀 더 정확히는 그렇게 했다고 판단한) 조선 조정의 의도를 의심했다. 대마도에서는 안용복의 고소장을 물리치도록 막부에 요청하고 그 일행을 표착민(漂着民)으로 처리해 자신들을 거쳐 송환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안용복 일행은 목표했던 울릉도 · 독도의 조선 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1696년 8월에 조선으로 송환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막부의 결론은 1696년 1월에 이미 나와 있었다. 조선은 역관이 귀국한 뒤인 1697년에야 그런 사실을 알았고, 이듬해 4월 막부의 결정을 확인한다는 서계를 회신했다. 석 달 뒤인 7월에 막부는 이 서계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이듬해 1월 대마도에 알렸다. 이로써 안용복 사건을 발단으로 불거진 울릉도 · 독도의 조선 영속과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은 6년여 만에 일단락된 것이었다.

이번에도 안용복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관리를 참칭하고 자발적으로 월경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목은 더 무거워졌다. 안용복은 1696년 8월 하순 강원도 양양에 도착했지만 현감에게 구금되었다가 며칠 뒤 탈출해 그동안 주로 거주한 동래부로 갔다. 그러나 9월 12일에 체포되어 한양으로 이송되었고 비변사에 구금되어 국문을 받기에 이르렀다.

대신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유상운(柳尙運. 영의정) · 윤지선(尹趾善. 좌의정) · 서문중(徐文重. 우의정) · 유집일(兪集一) · 민진장(閔鎭長. 병조판서) · 최석정(崔錫鼎. 이조판서) · 김진구(金鎭龜) · 오도일(吳道一) 등 노론 대신들은 처형을 주장했다. 안용복의 도일은 건국 이래의 공도 정책을 어긴 범경(犯境) 행위이며, 대마도가 아닌 호키 주를 거쳐 막부와 접촉하고 정부문서를 위조한 것은 외교적 범죄라는 논거였다.

남구만(영중추부사) · 윤지완(영돈녕부사) · 신여철(申汝哲. 지중추부사) 등 소론 대신들의 의견은 달랐다. 그들은 범죄행위는 인정하지만 호키 주 태수를 직접 만나 울릉도 · 독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막부에 주장한 것은 국가에서도 제기하기 힘든 문제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런 공로를 인정해 감형을 주장했다. 직책과 당파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형이 우세한 견해였지만, 격론 끝에 안용복은 결국 유배형으로 감형되었다(1697년(숙종 23) 3월). 1658년에 태어난 것으로 계산하면 40세 때의 일이었다. 유배형에 처해진 뒤 그의 행적은 알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용복 [安龍福] - 희생과 고난으로 독도를 지킨 조선의 백성 (인물한국사, 김범, 장선환)